

	규정	문서번호	TWP-B204	
		제정일자	1996. 03. 01.	
	교원인사위원회 운영 규정	개정일자	2012. 07. 27.	
		개정번호	2	페이지

## 목 차

부 칙

작성부서	교무처	제정일자	1996. 03. 01.
------	-----	------	---------------

구 분	작 성	검 토					승 인	
		직 책	담 당	교학부총장	학생처장	산학협력처장		기획처장
서 명								
일 자								



# 규정

## 교원인사위원회 운영 규정

문서번호	TWP-B204
제정일자	1996. 03. 01.
개정일자	2012. 07. 27.
개정번호	2
페이지	2/4

### 개정이력

개정번호	개정일자	개정내용
1	2009. 01. 30.	- 7차 개정
2	2012. 07. 27.	- 대학 → 대학교 문구 정리

	<b>규정</b>		문서번호	TWP-B204
			제정일자	1996. 03. 01.
	<b>교원인사위원회 운영 규정</b>		개정일자	2012. 07. 27.
			개정번호	2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학교법인 동원학원 정관 제48조 및 직제규정 제7조에 의하여 동원대학교(이하 “이 대학교”라 한다)에 설치한 교원 인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2.7.27>

**제2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정관 제50조에 의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정관 제51조에 의하여 교무처장을 당연직으로 한다.

③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사안별로 임명한다.

**제3조(관계자출석)**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 교원을 출석시켜 그의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**제4조(회의)** ① 위원회의 소집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한다.

② 위원회의 개최는 정관 제52조에 의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의안표결에 있어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.

**제5조(보칙)**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방침에 의한다.

#### 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이 대학교 개교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칙

	<b>규정</b>		문서번호	TWP-B204
			제정일자	1996. 03. 01.
	<b>교원인사위원회 운영 규정</b>		개정일자	2012. 07. 27.
			개정번호	2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.

**부칙**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.

**부칙**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